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·운영에
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교육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수·부교수 및 조교수는 학생의 교육·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총장의 허가를 받아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7076호, 2020. 3. 24. 공포, 2020. 9. 25. 시행)됨에 따라 총장은 교수·부교수 및 조교수에 대한 사외이사 겸직허가를 하려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의 필요성, 허가 기간의 적절성 및 허가 대상기업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
3) 행정규제

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3(교수 등의 사외이사 겸직허가 기준 등) ① 총장은 법 제6조의 3제1항에 따라 교수·부교수 및 조교수에 대한 사외이사 겸직허가를 하려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「사립학교법」 제53조의4제1항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.

1. 허가의 필요성
2. 허가 기간의 적절성
3. 허가 대상기업의 적합성
4. 그 밖에 총장이 학생의 교육·지도 및 학문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수·부교수 및 조교수는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그 해에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 전부를 보고하는 경우 해당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지급 내역이 포함된

서류를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발급받아 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해당 연도 보수 전부의 월별 지급 내역
2. 교통비 및 회의수당 등 항목별 지급 내역

③ 제1항에 따른 검직허가의 세부기준은 총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<u><신 설></u>		<u>제7조의3(교수 등의 사외이사 겸</u> <u>직허가 기준 등) ① 총장은 법</u> <u>제6조의3제1항에 따라 교수 ·</u> <u>부교수 및 조교수에 대한 사외</u> <u>이사 겸직허가를 하려면 법 제6</u> <u>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「사</u> <u>립학교법」 제53조의4제1항에</u> <u>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</u> <u>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</u> <u>해야 한다.</u> <u>1. 허가의 필요성</u> <u>2. 허가 기간의 적절성</u> <u>3. 허가 대상기업의 적합성</u> <u>4. 그 밖에 총장이 학생의 교육</u> <u>· 지도 및 학문연구에 지장</u> <u>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</u> <u>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 <u>②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수 ·</u> <u>부교수 및 조교수는 법 제6조의</u> <u>3제2항에 따라 그 해에 해당 사</u> <u>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 전부를</u> <u>보고하는 경우 해당 연도 12월</u> <u>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</u> <u>지급 내역이 포함된 서류를 해</u>		

	<u>당 사기업체로부터 발급받아 총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</u> <u>1. 해당 연도 보수 전부의 월별 지급 내역</u> <u>2. 교통비 및 회의수당 등 항목 별 지급 내역</u> <u>③ 제1항에 따른 겸직허가의 세 부기준은 총장이 정한다.</u>
--	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3-6867